

1. 개정 이유

지게차 조종 자격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 인정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게차 조종 자격 부칙 기한 연장 등(안 부칙 제2조, 제3조)

- 1) 지게차 조종 작업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 2) 지게차 조종 자격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인정 특례를 마련함

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의 특례기한 연장(안 부칙 제216호 제3조)

-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취득자는 별표6 제8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부칙 제216조 제3조 기한 내 이수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 이수기한을 연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13. ~ 1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노동부령 제216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274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에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지게차 조종자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4호의2 규정을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게차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적합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가 있고 지게차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년 7월 15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제4의2호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용노동부령 제216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16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에 관한 특례) ----- ----- ----- ----- ----- ----- ----- ----- ----- -----.
1.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u>2020년 12월 31일까지</u>	1. ----- ----- ----- <u>2021</u>
2.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u>2021년 6월 30일까지</u>	2. ----- ----- ----- <u>2021</u>
3.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3. -----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u>202</u> <u>1년 12월 31일까지</u> 4.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 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u>2022</u> <u>년 6월 30일까지</u> 고용노동부령 제274호 유해·위 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u><신 설></u> <u><신 설></u>	----- ----- <u>2022</u> 년 6월 30일----- 4. ----- ----- ----- <u>2022</u> 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령 제274호 유해·위 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u>제2조(지게차 조종자격에 관한 특</u> <u>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지게차</u> <u>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u> <u>하여는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u> <u>고 별표 1 제4호의2 규정을 202</u> <u>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u> <u>제3조(지게차 조종작업 유경험자</u> <u>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u> <u>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적</u> <u>합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u> <u>거면허는 제외)가 있고 지게차</u> <u>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u> <u>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년</u> <u>7월 15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u> <u>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u> <u>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u> <u>표 1 제4의2호에도 불구하고 지</u>
---	--

	<u>게차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u>
--	--------------------------------